

# 국내·외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에 관한 규정

제정 2001. 9. 1.    개정 2009. 9. 1.  
전문개정 2013. 3. 1.    개정 2013. 7. 1.  
개정 2014. 3. 1.    개정 2017. 5.23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 2 및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본 대학과 국내·외 타대학 등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과 국내·외 타대학 등 간에 체결된 학술 교류협정에 따라 교류·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하며 제3조 4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한다.

**제3조(학생구분)** 국내·외의 교환학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본 대학 교환학생 : 본 대학 재학생이 국내·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
2. 국내·외 타 대학 교환학생 : 국내·외 타대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
3. 외국대학 단기 연수생 : 본 대학 재학생이 방학 중에 외국대학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계절 강좌에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.
4. 국내 연수기관 연수생 : 본 대학 재학생이 국내연수기관(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포함)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사이버 강좌에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.

**제4조(이수단위)** 학점의 이수단위는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, 실험·실습·실기 및 체육의 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

**제5조(주관부서)** 외국대학과의 학생교환에 관한 업무는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하며,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## 제 2 장 본 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

**제6조(지원자격)** 본 대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학업성적의 평균학점이 3.0 이상인 자
2. 수학하려는 해당국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(해당대학 기준에 따름)
3. 학칙 상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4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*제7조(수학기간 및 등록)** ①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,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한다.

② 제1항의 수학기간 중에는 본 대학에서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원서류 및 지원시기)** 외국대학에서 수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
2. 학부(학과)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1부
3. 국문성적증명서 1부
4. 수학계획서 1부
5. 기타 필요한 서류

**제9조(선발절차)**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의 선발은 소속 학부(학과)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교과목 이수)** 본 대학 재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원자의 전공 과목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성적증명서 제출 및 학점인정)** ①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학생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출된 성적은 소속 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제2항의 취득학점은 학기당 18학점,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의거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며,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고 전체성적에 합산한다.

**제12조(학생지도)** 본 대학생의 학생지도는 교환대학과 협의하여 본 대학의 학칙 또는 교환대학의 학칙에 의한다.

### 제 3 장 외국인 대학생의 본 대학 수학

**제13조(지원자격)** 외국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한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
2. 학칙상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

**제14조(수학기간)** 외국인 교환학생의 본 대학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**제15조(지원서류 및 수학허가)** ① 외국학생이 본 대학에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(국문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
2. 학부(학과)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1부
3. 성적증명서 1부
4. 수학계획서 1부
5. 기타 필요한 서류

② 외국인 교환학생의 선발은 소속학부(학과)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16조(수강과목)** 수강과목은 당해학부(학과) 교육과정의 개설과목 중에서 학기당 18학점 총 36학점 이내로 한다.

**제17조(학칙준수)** 외국인 교환학생은 본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본 대학 학생의 국내 타 대학 등 수학

**제18조(국내 교류대학 등에서의 수학)** ① 본 대학 재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(학과)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학부(학과)장 추천서 1부
2. 학점 교환제 수강신청서 2부

② 교류대학(연수기관 포함)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자
2. 학칙 상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③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정규학기는 2학기 이내로 하며, 계절수업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5.23.>

④ 수학허가의 취소는 수업일수 4분의 1기간 이내에 수학허가취소원(별지 3호 서식)을 본 대학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19조(교과목 이수)** ① 교류대학과의 학점교환은 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대상 교과목 및 교과목 구분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선행되어야 한다.

②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 이내(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)로 하고, 교류대학에서의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7.5.23.>

③ 이수교과목은 전공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부(학과)장의 승인을 얻어 교양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.

**제20조(수강신청)** 교류대학 수학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1. 소속 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(별지 1호 서식)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변경원(별지 2호 서식)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3. 위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서 1부를 교류대학에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등록)** 교류대학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본 대학에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절수업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강료는 교류대학의 수강료징수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17.5.23.>

**제22조(성적처리)** ①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교과목 주관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의 성적평가 체제에 맞추어 환산하여 학적부에 등재한다.

**제23조(학칙준수 등)** ①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자는 그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수학에 따른 편의성(도서관 이용 등)에 관한 사항은 그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5 장 국내 타 대학학생의 본 대학 수학

**제24조(타 대학 학생의 본 대학 수학)** ① 본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.

② 소속대학 총장은 지원자 명단을 학기개시(계절수업 개강) 1개월 전까지 본 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5.23.>

③ 본 대학 총장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개시(계절수업 개강) 2주 전까지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5.23.>

④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 정원의 20%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강정원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5.23.>

⑤ 수학기간은 정규학기의 경우 2학기 이내로 하고 계절수업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5.23.>

⑥ 수학허가의 취소는 소속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에 수학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25조(수강신청)** 수강신청과 이의 변경 및 취소는 소속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 본 대학에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취득학점)** ①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 이내(계절수업 6학점 이내)로 하며, 수학기간 동안 총 취득학점은 계절수업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7.5.23.>

② 취득한 학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

다.

**제27조(등록금 및 수강료 등)** ① 정규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소속대학에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계절수업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5.23.>

**제28조(시설물의 이용)** 수학이 허가된 학생은 도서관,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**제29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관계규정을 준용하고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학간의 협의하여 시행한다.

## 제 6 장 외국대학단기연수생

**제30조(지원자격)** 본 대학 학생이 외국대학 단기연수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해당 학부(학과)장의 추천을 받은 자
2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*제31조(지원서류)** 외국대학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
2. 학부(학과)장 추천서 1부
3. 수학계획서 1부
4. 기타 필요한 서류

**제32조(등록 및 수강신청)** 외국대학에서 단기연수로 수강하는 교과목의 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는 연수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33조(성적증명서 제출 및 인정범위)** ① 외국대학에서 단기연수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본 대학 교과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또는 그와 유사한 교과목이어야 하며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이내로 한다.

② 외국대학 단기연수를 마친 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출된 성적은 주관학부(학과)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 계절수업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17.5.23.>

④ 제3항에 의한 성적은 본 대학 환산성적으로 기록하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고 전체 성적평점에 합산한다.

## 제 7 장 운영세칙

제34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1호>

## 국내·외대학 등 수강신청서

지 원 자	소 속					
	학 번			학 년		
	성 명	(한글)	(한자)	주민등록번호		
		(영문)		병역사항	미필, 군필, 면제	
	현 주 소			전화번호	( )	
수학 내용	수학대학	대학(교)		학부(학과)(과)		
	수학기간	20 . . . - 20 . . .				
수 강 예 정 교 과 목						
수학대학 신청 교과목			우리대학 인정 교과목			
이수 구분	교과목명	학점	이수 구분	교과목명	학점	교과목 담당교수 (날인)
위와 같이 국내·외대학등의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			
신 청 자					(인)	
					학부(학과)장	
대 경 대 학 교 총 장 귀하						

<별지 2호>

## 국내·외대학 등 수강신청변경원

지 원 자	소 속					
	학 번			학 년		
	성 명	(한글)	(한자)	주민등록번호		
		(영문)		병역사항	미필, 군필, 면제	
	현 주소			전화번호	(    )	
수학 내용	수학대학	대학(교)		학부(학과)(과)		
	수학기간	20 . . . - 20 . . . .				
수 강 신 청 변 경 내 역						
당초 수강신청 교과목			변경 수강신청 교과목			
이수 구분	교과목명	학점	이수 구분	교과목명	학점	교과목 담당교수 (날인)
위와 같이 국내·외대학등의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						
신 청 자						(인)
						학부(학과)장
대 경 대 학 교 총 장    귀하						



